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12월 15일)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 제안이유

-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하고, 기존의 부천중부·남부 경찰서 명칭이 각각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 제17보병사단 건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육군 제7873부대장을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 29. 공포·2010. 9. 1. 시행)으로 경기도부천교육청이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천시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부천교육청 교육장”을 “경기

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부천남부경찰서장과 부천중부경찰서장”을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장”으로 하며, “육군 제7873부대장”을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으로 함(안 제3조제2항).

나. 부천시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분야별 담당간사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6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부천시의회의장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4. 부천원미경찰서장
5. 부천소사경찰서장
6. 부천오정경찰서장
7.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
8. 국군기무사령부 제601부천지역담당관
9. 국가정보원 부천지역담당관
10. 부천소방서장
11. KT부천지사장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제3항제3호 중 “육군 제7873부대 동원장교”를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 동원장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육군 제7873부대 작전장교”를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 작전장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